궁능유적본부 공고 제2026 - 282호

2026년 제6차 궁능유적본부(창경궁관리소)
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

2026년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 근로자 채용(6차) 최종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25일

궁능유적본부장

1. 최종합격자

직 종	채용분야	최종합격자 응시번호
공무직	조리원	조리-2

2. 합격자 제출 서류

가. 합격자는 채용에 필요한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창경궁관리소로 2026. 11. 30.(월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우편 접수 가능

○ 구비서류

- 건강검진 통보서
- 주민등록등본・초본 각 1부(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)
- 사진(반명함판) 1매 및 통장사본 1부(급여 지급용 계좌)
-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(* 붙임1 서식 작성)

○ 채용 예정일 : 2026. 12. 1.(화)

○ 합격 통보 후에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, 소명절 차를 거친 후 합격 취소가 가능합니다.

○ 건강검진 통보서 등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.

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경궁관리소 인사담당자(02-2172-0102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「붙임1」

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국가유산청 창경궁관리소 공무직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, 공정채용기준 제25조(채용결격사유)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,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, **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.**

①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20 년 월 일

채용예정자: (서명)

국가유산청장 귀하